

# 발전노동자

민주노조 사수  
전력산업공공성 강화  
애고자 원칙복직  
임금체계개악 쟁취  
생존권 사수

제202호

발행인 : 신연규  
발행일 : 2015.06.30  
☎ 070-4048-5991  
FAX 070-7500-8158

## 6/25 통상임금 청구 소송 판결의 내용과 의미

2012년초 발전노조는 사측의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에 대해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통상임금 산정에 오류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개별 소송을 통해 문제 제기하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막대한 소송비용과 실무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발전노조는 집단소송을 택했고, 2012.6.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공기업 최초의 통상임금 청구소송이기도 했다.

3년을 넘긴 재판의 선고가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재판부는 ‘2010년 이후 기본상여금월(300%), 장려금(200%),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발전노조의 통상임금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회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기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회사가 지급을 지체할 경우 언제든지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판결은 1,2,3차 소송자의 기산점이 동일하게 적용받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발전노조는 추가 소송을 준비/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회사노조는 상식 이하의 주장을 서슴치 않고 있다. 특히 “추가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합의서를 적용하지 않겠다.” 며 소송참가자들을 협박하는 것은 회사노조가 자신들이 체결한 합의서의 온전한 효력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발전노조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노조는 어떠한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발전노조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거론하며, 소송 미참가자들의 상대적 이익을 강조하였다. 합의서 작성 경위로 보거나 합의서 내용을 생각해 보라. 발전노조의 소송이 없었다면, 회사가 합의서를 써주었겠는가? 발전노조의 소송이 패소한다면,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합의서가 온전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발전노조가 소송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대표노조가 할 일은 발전노조의 소송을 지지·옹호하고, 소송 참가자들을 격려하면서, 발전노조의 소송 결과대로 합의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그늘 드리운 석탄화력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제6차 계획과 단순 비교하면 석탄화력 4,000MW를 줄이고, 원자력 2,410MW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2029년까지 원자력 2기만 추가 건설해도 전체 전력설비는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기고 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유나 정책연구실장

그 동안 민간발전회사들은 허가 취득에 적극적이었으나, 자금사정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건설하기로 했던 발전소를 짓지 않거나 건설공기를 늦추기 일쑤였고, 허가권을 사고파는 일까지 있었다. 반면, 공기업인 발전자회사들은 독자적인 신규건설을 제한받았으며, 스스로도 신규투자를 꺼렸다. 결과적으로 '공급'을 시장에 맡긴 결과 불확실성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설비예비율 목표가 높아졌고, 과잉설비는 향후 공급비용을 상승시킬 수 밖에 없다. 특히 제7차 계획에서는 목표예비율 22% 중 7%는 공급 지연 등 불확실성 때문에 추가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발전산업 경쟁체제로 인해 드러난 공급안정성과 비용의 문제를 정부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외면하고 있다.

2011년 9월 순환정전을 전후하여 민간발전사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고, 앞다투어 LNG발전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발전설비의 포화 및 예비율 증가로 LNG발전의 가동율이 크게 떨어졌으며, 비례하여 민간발전사들의 수익도 감소하였다. 이에 민간발전사들은 그간 정부에 대해 용량요금(CP)인상과 일정 가동률 보장을 요구해왔다. 제6차에서 허용한 남동발전의 영흥 7,8호기 건설 취소는 민간발전사들의 가동률 저하를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역시 제6차 계획에서 4개 민간발전회사(SK, 포스코, 삼성, GS)에 허가된 8,000MW의 석탄화력 건설은 계속 추진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민간의 특혜는 보장하면서 공기업 발전회사의 비중은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제 곧 발전 5개사는 건설인력의 재배치, 수익성 악화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정부와 회사는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또 다시 발전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잘못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본질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한다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끝>

## 통상근무자 시간외수당, 노동부도 고정금 인정

- 회사와 회사노조만 몰랐나? -

올해 1월부터 남동발전이 통상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10시간 중 4시간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였고, 2월에는 중부발전이 10시간 중 5시간을 삭감하였다. 발전노조의 수차례 시정 요구에도 회사와 회사노조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발전노조는 지난 4월 28일 2개 회사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조사가 진행되었고, 2개 회사는 대표(다수)노조와 노사협의를 거쳐 6월 25일에 부랴부랴 체불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임금 삭감때는 안하던 노사협의를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한다?

통상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이전에 노사합의로 정한 고정금여라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안은 노동부에 가져갈 일도 아니었다. 교섭대표노조나 다수노조의 명확한 반대 의사만 있어도 회사가 결코 시도할 수 없는 일이다.

